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포항시보

제775호 2010. 4. 6(화)

- 시장지시사항..... 2
- ◀ 입법예고 ▶
-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제2010-413호)..... 9
-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(제2010-414호) 17
- ◀ 공 고 ▶
- 『제7회 포항국제불빛축제』 행사대행 사업자 모집 공고(제 2010-395호) 21
- 공 인 공 고(제2010-417호) 25

회								
람								

시장 지시(훈시)사항

- 2010. 4. 5(월) 확대간부회의 -

관 리 번 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훈 시 (4. 5)	<p>○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하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타까운 일이며 전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이므로 전공무원은 무엇보다 시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,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업무 수행하여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이러한 때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강화해 주시고, 축제성 행사 및 프로그램은 지양하고, 음주행위 자제·복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 경건한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p>○ 경로당 자주 방문토록하고,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외부활동 적극 유도하기 바랍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00여개의 경로당에 21,500여명의 노인들에게 외부활동을 유도하는 영상물 상영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랍니다. <p>○ 부서장은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직원들이 열람·숙지하도록 하여 업무 참고 및 활용, 부서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,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.(확대간부회의 시청토록 조치)</p> <p>○ 앞으로 관할 각종 사업, 공사 등에 대하여 구청·국과장은 시장이 알 수 있도록 간략히 구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전 부 서 (재난안전과) (감사담당관)</p> <p>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남북구보건소 읍 면 동</p> <p>전 부 서</p> <p>전 부 서</p>

관 리 번 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<p>훈 시 (4. 5)</p>	<p>○ 2011년 국가 예산 확보 철저.</p> <p>- 특히 지원규모와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광역특별회계예산 확보를 위해 철저한 업무파악, 중앙부처·도 해당부서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.</p> <p>○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.</p> <p>- 경북이 집행율 42.68%로 전국 최고이지만, 우리시 집행율은 31.61%로 경북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임. 각 부서는 미집행 사유를 다시 한번 분석하여 예산 조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.</p> <p>○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, 정보 부족으로 구인·구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적극적인 중간 역할을 하기 바랍.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나누기(job sharing)도 중요하므로 기업체와 지속적인 협의 및 방안 마련하기 바랍.</p> <p>○ 경북도민체전 및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준비 철저.</p> <p>- 교통질서, 숙박, 위생, 가로정비, 친절교육 등의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, 공기단축하여 체전 기간 전에 진행중인 공사 마무리 되도록 추진 바랍.</p> <p>○ 새봄을 맞아 깨끗한 포항이 되도록 중앙분리대, 방음벽 세척 등 대대적인 환경정비 실시 바랍.</p>	<p>기획예산과 전 부 서</p> <p>기획예산과 전 부 서</p> <p>경제노동과</p> <p>체육지원과 전 부 서</p> <p>청 소 과 남·북구청 읍 면 동</p>

관 리 번 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지 시 '10-05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기 지시사항(지시번호:08-126, 지시일자: '08.3.24)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. 지시 이후 도로점용허가 사항에 대해 보고하기 바람. - 도로변 정비는 지주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향후 도로점용허가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바람. 	남·북구청 건설과
지 시 '10-05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대동 하수종합처리장 주변 부지와 유수지에 꽃단지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봄·가을 축제 개최 등 세계적인 공원이 되도록 검토 추진 바람. 	도시녹지과
지 시 '10-05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로변 불법 구조물·적치물·광고물 등 일제 정비. - 도로변 불법으로 설치된 현옷수거함, 타이어, 에어라이트, 주차금지 표시물 등을 정비하기 바람. 	남·북구청 (읍 면 동)
지 시 '10-05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 폭력 근절에 노력 바람. - 학교 폭력이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음. 원인 파악하여 제거하도록 하고, -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근절활동 펼쳐주기 바람. 	여성가족과 (저출산고령화 대책과)
지 시 '10-05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일해변마라톤 대회 풀코스 추가 검토 추진. - 우리시 해변도로는 마라톤 풀코스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됨. 10년의 역사를 가진 통일해변 마라톤 대회에 풀코스를 추가하여 품격을 높이기 바람. 	체육지원과
지 시 '10-06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수재생과 본청으로 복귀토록 조치 검토 바람. 	업 무 과 (재정관리과)

관 리 번 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지 시 '10-06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송도 해변도로 축항에 레스토랑, 커피숍 등을 유치 가능한지 관계 법령·절차 등을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. 	수산진흥과 (재난안전과) (남 구 청)
지 시 '10-06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독거노인 주거환경 바꾸기 추진. -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노인들이 많은 데 주거환경개선 추진하기 바람. 	저출산고령화 대책과 (건 축 과)
지 시 '10-06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무원의 일류기업 포스코 견학 추진 및 홍보. - 공무원이 포스코를 알지 못하면 우리지역 세계일류기업인 포스코 전국 홍보는 하지 못할 것임. 우선 공무원부터 포스코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견학을 추진하기 바람. 	자치행정과
지 시 '10-06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캠페인 특정분야 선택 집중 추진 및 물비누사업을 모든 숙박업소에 보급 추진. - 환경캠페인을 광범위하게 추진하지 말고, 특정 분야 지정 추진하여 확실히 실천토록 하고, 그 파급효과로 다른 분야까지 확대 실천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. - 추진중인 물비누사업은 전 숙박시설 대상으로 추진 바람. 	환경위생과
지 시 '10-06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죽도위판장 건설공사 공기단축 추진. -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공기단축 방안을 마련하여 죽도 시장위판장(주차장) 건설 조속히 마무리 할 것. 주차장 완공까지 철저한 주차근무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바람. 	교통행정과

관 리 번 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지 시 '10-066	○ 우리시가 추진하는 업무 및 시정 추진사항과 관련 책자(문제은행집)를 제작·배부하고, 전직원 대상으로 평가를 검토 추진 바람.	기획예산과
지 시 '10-067	○ 각종 체납세 징수 철저 및 성과 반영 바람. - 체납세 징수 실적으로 업무 성과 평가하기 바람.	재정관리과 남·북구청
지 시 '10-068	○ 경북도가 '범도민 출산 서포터단' 을 구성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함.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도 추진하기 바람. - 우리시도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홍보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.	저출산고령화 대책과
지 시 '10-069	○ 파손되기 쉬운 주차금지 규제봉 시설을 절대 설치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,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해결하기 바람.	교통행정과 건설과
지 시 '10-070	○ 송도위판장 건설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,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.	수산진흥과

부시장 지시사항

- 2010. 4. 5(월) 확대간부회의 -

관 리 번 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<p>훈 시 (4. 5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당면업무 추진 및 노고에 감사를 드림. ○ 우리시 전역에 추진중인 각종 공사 현장에 공사표지판 또는 현수막(불편안내 사항)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. ○ 다가오는 6.2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. 직원과 각종 단체가 함께 홍보하여 시민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, 투표율이 75% 이상 되도록 특히 읍면동장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. 	<p>전 부 서</p> <p>전 부 서</p> <p>전 부 서 자치행정과 남북구청 읍 면 동</p>

입법예고

포항시 공고 제2010-413호

「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포항시장 박승호

2010년 4월 2일

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2010년 1월 8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미술관 명칭 변경 및 관람객 입장 시간 분석을 통한 관람시간 조정

2. 주요내용

- “포항시립미술관”을 “시립미술관”으로 변경
- 전시실 명칭변경 및 관람시간 조정

3. 조례안 : 붙임

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포항시립미술관” 을 “시립미술관” 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- 제2조(전시실 운영) ① 시립미술관(이하 “미술관” 이라 한다)의 전시실은 1전시실·2전시실·3전시실·4전시실 및 초현 장두건관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
- ② 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모든 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.

제3조제1호 중 “설날·추석연휴 다음날” 을 “설·추석명절 당일” 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” 를 삭제하고,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6월 ~ 9월 : 10:00부터 19:00까지
2. 10월 ~ 다음해 5월 : 10:00부터 18:00까지

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.

1.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

제7조제2항 중 “포항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” 를 “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” 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중 “7세” 를 “보호자를 동반한 7세” 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6월 ~ 9월 : 10:00부터 19:00까지
2. 10월 ~ 다음해 5월 : 10:00부터 18:00까지

제14조제2항 중 “포항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” 를 “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” 로 한다.

제15조제4호 중 “부적당하다고” 를 “공익 및 미술관의 관리·운영상 부적당 하다고” 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포항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의” 를 “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의” 로 한다.

제26조 본문 중 “포항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” 를 “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” 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포항시의회 의원

제28조 본문 중 “심의·자문한다.” 를 “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.” 로 한다.

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2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「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 중 “포항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” 를 “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” 로 한다.

제34조 본문 중 “포항시립미술관장에게” 를 “시립미술관장에게” 로 한다.

별표 1의 제목 중 “포항시립미술관” 을 “시립미술관” 으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의 제목 중 “포항시립미술관” 을 “시립미술관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2】

구분	기준	단위	단가	비고
전시실	1일(8시간)	m ²	240	○ 1시간 초과시 마다 해당 사용료의 25% 가산
부속시설 (세미나실 등)	1회(4시간)	회	50,000	
냉난방	대관시설 사용료의 20%			
방송영상	대관시설 사용료의 20%	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포항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포항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시립미술관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2조(전시실 운영) ① 포항시립미술관(이하 “미술관”이라 한다)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·기획전시실·별관 전시실 및 특별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전시실 운영) ① 시립미술관(이하 “미술관”이라 한다)의 전시실은 1전시실·2전시실·3전시실·4전시실 및 초현 장두건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
<p>② <u>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설전시실·별관전시실·특별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	<p>② <u>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든 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 운영 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3조(개관 및 휴관) (생략)</p> <p>1. 1월 1일, <u>설날·추석연휴 다음날</u>, 매주 월요일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3조(개관 및 휴관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설·추석명절 당일</u>....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관람시간)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u>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하절기(3월~10월) : 10:00부터 22:00까지</u></p> <p>2. <u>동절기(11월~다음해 2월) : 10:00부터 21:00까지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관람시간)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 (삭제)</p> <p>1. <u>6월~9월 : 10:00부터 19:00까지</u></p> <p>2. <u>10월~다음해 5월 : 10:00부터 18:00까지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관람의 금지) (생략)</p> <p>1. <u>정신이상자</u></p> <p>2. <u>술에 취한자</u></p> <p>3. ~ 4. (생략)</p>	<p>제5조(관람의 금지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</u></p> <p>2. (삭제)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관람료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시장은 전시의 성격·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포항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7조(관람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u>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</u>..</p>

현 행	개 정
<p>③ ~ ⑥ (생략)</p> <p>제8조(무료관람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</p> <p>3. ~ 6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3조(사용시간) ① (생략)</p> <p>1. <u>하절기(3월~10월) : 10:00부터 22:00까지</u></p> <p>2. <u>동절기(11월~다음해 2월) : 10:00부터 21:00까지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14조(대관허가 신청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<u>포항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의</u> 심의를 거쳐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시실을 제외한 대관 또는 편의시설사용·수익 허가는 <u>포항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</u>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5조(대관허가의 제한)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운영위원회의 대관 심의 결과 <u>부적당하다고</u> 인정한 경우</p>	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무료관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보호자를 동반한 7세.....</u>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사용시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6월~9월 : 10:00부터 19:00까지</u></p> <p>2. <u>10월~다음해 5월 : 10:00부터 18:00까지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대관허가 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u>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</u>.....<u>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</u>...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대관허가의 제한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<u>공익 및 미술관의 관리·운영상 부적당하다고</u>...</p>

현 행	개 정
<p>제25조(소장작품 기증)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가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<u>포항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</u>의 자문을 받아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.....</p> <p>제25조(소장작품 기증) ①<u>시립미술관품평가위원회</u>의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6조(설치) 「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<u>포항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	<p>제26조(설치)<u>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</u>.....</p>
<p>제27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</p> <p>3. ~ 4.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27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포항시의회 의원</p> <p>3. ~ 4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8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자문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28조(위원회 기능)<u>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.</u>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2조(위원수당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32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「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필요한 경비</p>

현 행	개 정
<p>제33조(주요사업 심의 자문기구 운영)</p> <p>① 시장은 소장 작품의 원활한 구입 및 가격결정을 위하여 <u>포항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</u>를 둔다.</p> <p>② <u>포항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</u>는 미술관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<u>포항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</u>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④ ~ ⑦ (생략)</p> <p>제34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<u>포항시립미술관장</u>에게 위임한다.</p>	<p>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33조(주요사업 심의 자문기구 운영)</p> <p>①<u>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</u>.....</p> <p>② <u>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</u>.....</p> <p>③ <u>시립미술관작품평가위원회</u>....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4조(권한의 위임)<u>시립미술관장</u>에게.....</p>

포항시 공고 제2010-414호

「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포항시장 박승호

2010년 4월 2일

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1. 개정이유

2010년 1월 8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미술관 명칭 변경 및 자구일부를 수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“포항시립미술관”을 “시립미술관”으로 변경
- 자구의 일부를 어법에 맞게 수정

3. 조례안 : 붙임

**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일부개정규칙안**

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포항시립미술관” 을 “시립미술관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결정한 구입한 구입가격보다” 를 “결정한 구입가격보다” 로 하고,
“20%이상” 을 “20퍼센트 이상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“채점제 가부제를” 을
“채점제와 가부제를” 로 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 제목 중 “포항시립미술관” 을 “포항시 시립미술관” 으로 하고, 본문
중 “포항시립미술관” 을 “포항시 시립미술관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 서식 본문 중 “포항시립미술관” 을 “포항시 시립미술관” 으로 하고,
“포항시립미술관장” 을 “시립미술관장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 서식 본문 중 “포항시립미술관” 을 “포항시 시립미술관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 서식 본문 중 “포항시립미술관” 을 “포항시 시립미술관” 으로 하고,
“포항시립미술관장” 을 “시립미술관장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 서식 제목 중 “포항시립미술관” 을 “시립미술관” 으로, 본문 중 “포항시립
미술관” 을 “포항시 시립미술관” 으로 하고, “포항시립미술관장” 을 “시립미술관장”
으로 한다.

별지 제10호 서식 본문 중 “포항시립미술관” 을 “포항시 시립미술관” 으로 하고, “포항
시립미술관장” 을 “시립미술관장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12호 서식 본문 중 “포항시립미술관” 을 “포항시 시립미술관” 으로 하고,
“포항시립미술관장” 을 “시립미술관장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16호 서식 제목 중 “포항시립미술관” 을 “시립미술관” 으로 하고, 본문 중 “포항

시립미술관장”을 “시립미술관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8호 서식 본문 중 “포항시립미술관”을 “포항시 시립미술관”으로 하고,
“포항시립미술관장”을 “시립미술관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0호 서식 본문 중 “포항시립미술관”을 “시립미술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1호 서식 본문 중 “포항시립미술관”을 “포항시 시립미술관”으로 하고,
“포항시립미술관장”을 “시립미술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3조(대표) ① 포항시립미술관(이하 “미술관”이라 한다)의 관람권 대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전부터 폐관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10조(소장작품 선정절차 등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작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 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가격을 평가하되, 구입가격은 각 위원의 평가 가격 중에서 최고 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. 다만, 결정한 구입한 구입가격보다 상하 20%이상 차이가 나는 평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다시 평균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④ 작품평가위원회에서 가격 결정된 작품 중에서 수집 결정을 하되, 채점제 가부제를 병행하여 결정한다.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 16호 서식의 작품수집 심의안, 별지 제17호 서식의 수집추천작품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대표) ① 시립미술관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소장작품 선정절차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결정한 구입가격보다 ...20퍼센트 이상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④</p> <p>.....</p> <p>채점제와 가부제를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공 고

포항시 공고 제 2010-395호

『제7회 포항국제불빛축제』행사의 종합기획 및 연출, 홍보 등 제반사항에 대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사대행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10년 3월 30일

『제7회 포항국제불빛축제』 행사대행 사업자 모집 공고

1. 행사개요

- 행사명 : 제7회 포항국제불빛축제
- 기간 : 2010. 7. 23 ~ 7. 26(4일간)
- 장소 : 북부해수욕장, 형산강체육공원, 시내 일원
- 주최 : 포항시(연화행사 주관:POSCO)
- 사업비 : 315백만원(부가세 포함)

2. 참가자격

-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 란에 이벤트업이나 행사 대행업 또는 광고 대행업으로 설립된 법인

- ※ 상기 목적의 법인설립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이며, 공모업체 결정때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·주관한 단일 행사 3억원 이상의 축제, 문화예술 행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 업체

3.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

- 기 간 : 2010. 3. 30(화) ~ 4. 13(화)
- 공고방법 : 포항시 홈페이지 등

4. 대행사업자 응모접수

- 접수기한 : 2010. 4. 13(화) 18:00까지
- 접 수 처 : 포항시청 관광진흥과(축제관리담당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업체 대표자 또는 직원)
- 제출서류
 - 1) 『제7회 포항국제불빛축제』 사업계획서 10부
 - 2) 사업비에 대한 운용계획(사업계획서에 포함 작성)
 - 3) 최근 3년간 행사 실적 증명서
 - 4) 법인등기부등본(공고일 이후 발급된 등본) 1부
 - 5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- 6) 부가가치세 납부실적 및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(2008~2010년)
 - 7) PT자료 CD 1부(제안 설명회 시 발표용 : 15분 이내 분량)

5. 사업계획 제안서 심사 관련

- 사업계획 주요사안
 - 지역설화 및 바다, 항만, 불과 빛 등을 주제화
 - 개막·축하행사
 - 해양스포츠제전과 연계 방안
 - 전통문화와 지역예술이 조화된 거리 퍼레이드 연출계획
 - 기타 축제행사 운영계획(안전, 경비, 소방, 질서대책 등) 등
- 주요 채점부문
 - 축제 홍보 방안
 - 축제 캐릭터, 홍보물 디자인 완성도
 - 문화, 설화 등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주제의 독창성
 - 프로그램 완성도, 실현가능성

- 예산의 적정성, 현실성

6. 사업계획 심사

- 1차 서류심사
 -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심사
-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(과워포인트 15분 이내)
 - 일시 : 2010. 4. 16(금) 15:00예정(당일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)
-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주제반영, 프로그램 순으로 가점적용
 - ※ 응모 신청 업체별로 심사자료, 노트북 준비

7. 대행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

- 대행사 선정 및 결과 발표
 - 우리시 심사기준에 의거 적정 심사 후 심사 당일 현장에서 최우수 기획안을 선정, 우선 협상권 부여
 - 우선 협상권이 부여된 업체가 부적격 대상으로 판정되거나 여타 사정으로 행사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업체로 변경하여 협상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가격의 협상
 -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당해 사업예산(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) 이하로서 포항시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, 대행금액 협상을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함.
- 공모안 변경
 - 선정된 기획안의 제안 내용은 우선 협상과정 및 추진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음
- 제안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 재공고실시

8. 대행사업자 선정의 무효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준용

9. 기타 유의사항

- 심사결과 내역은 비공개이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업체는 심사위원 관계자와 접촉시도 및 관련 시 실격처리 됨
- 제출서류는 포항시 관광진흥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해당일까지 미 접수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응모업체의 책임임

- 제출 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, 제출한 서류는 일체 교환·변경·반환할 수 없으며, 제출된 기획안의 제반 권리는 전적으로 포항시에 귀속
- 서류심사 후 2차 심사 불참 시 참여의사 없음으로 간주, 심사제외
-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자 부담으로 하며, 그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

10.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관광진흥과 축제관리담당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(054-270-2251)

포항시공고 제2010 - 417호

공 인 공 고

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 및 폐기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10. 4. 5

- 1. 재등록 및 폐기공인 사용개시일 : 2010. 4. 9
- 2. 재등록사유 : 공인마모
- 3. 재등록공인명(전자이미지 포함) 및 인영
- 4. 폐기공인명(전자이미지 포함) 및 인영

공 인 명	규 격	인 영	비 고
포 항 시 북구용흥 동 장 인	한글전서체 2.1Cm정방형		

공 인 명	규 격	인 영	비 고
포 항 시 북구용흥 동 장 인	한글전서체 2.1Cm정방형		